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62

제출연월일: 2020. 10. 6.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으로 국 신설·명칭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책자문단 위원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신설·조정하여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국 신설·명칭변경에 따른 정책자문단 위원 수 및 위촉분야 확대(안 제3조제1항, 제3항)
 - 정책자문단 위원수: 30명 → 33명
 - 위촉분야 : 복지경제 → 일자리경제, 복지환경
- 나. 분과위원회 신설 및 조정(안 제5조제1항, 제2항)
 - 일반행정, 복지경제, 건설도시 등 3개 분과
 - → 일반행정, 일자리경제, 복지환경, 건설도시 4개 분과
 - 각 분과위원회 위원수 10명 → 8명
- 다.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3항)
 - 당연직 위원: 각 국의 국장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2항)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2020. 8. 28. ~ 2020. 9. 17.(20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30명"을 "33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같은 조 제3항 중 "복지경제"를 "일자리경제, 복지환경"으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소속 공무원 중 각 국의 국장이 된다"로 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체 회의는 구청장이, 분과별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복지경제"를 "일자리경제, 복지환경"으로, "3개"를 "4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과위원장은 당연직으로"를 "분과위원장은"으로, "10명"을 "8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조(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30 제3조(자문단 구성) ① ------ 33 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이하 명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 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워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 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3) ----------경제, 복 풍부한 일반행정, 복지경제, 건설 도시 등 분야별 전문인사를 구청 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울 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 ----- 소속 공무원 중 각 원"이라 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임 국의 국장이 된다. 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자문단의 운영) ① (현행과 제5조(자문단의 운영) ① (생 략) 같음) ②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하고 주 ② 전체 회의는 구청장이, 분과별 재한다. 다만 분과별 회의는 분과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주 위원장이 주재한다. 재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분야 제5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별로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일반행정, 복지 ----- 일자리경

<u>경제,</u> 건설도시 등 <u>3개</u> 분과위원	<u>제, 복지환경</u> <u>4개</u>
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소관	② 분과위원장은
국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	
원장을 포함하여 <u>10명</u> 이내로 구	<u>8명</u>
성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성	별영향평	가 검토	트의견 통 5	보서				
관리번호	2020A울산중구051							
정 책 명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소관부서	부서명	기획예산실						
	담당자명	류지숙	전화번호	052-290-30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8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예산실)	본 개정안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 제6조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 통계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개정의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국 신설·명칭변경에 따른 정책자문단 위원수 및 위촉분야 확대(안 제3조제1항, 제3항), 분과위원회 신설 및 조정(안 제5조제1항, 제2항),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2항)에 관한 것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 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3-1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할 것에 대한 개선의견임. 본 개정안 제3조(자문단 구성)에 관한 개선의견으로, 「양성평등기 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 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 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자문단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을 「양성평등기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9월 10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9월 01일

울산 중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윤진/052-290-4903)

기획예산실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0A울산중구051						
정 책 명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소관부서	부서명	기획예산실					
	담당자명	류지숙		전화번호	052-290-3063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제3조(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u>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수용□일부수용□불수용	제3조(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u>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2020년 09월 02일

울산광역시 중구 기획예산실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 자문단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3. 작성자

○ 소 속: 기획예산실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류지숙

○ 연락처: (052)290-3063